



칼빈 신학에 있어서 목사직과 장로직

이 형 기 | 교수 · 역사신학

칼빈의 경우는 목사직의 직능과 장로직의 직능이 뚜렷이 구별된다.
즉, 목사는 주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하고, 교회 전체를 감독하며,
장로직은 주로 처리와 권징에 참여하는 직능이다.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한국 장로교 안에서 목사직과 장로직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의 문제, 장로가 설교와 축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권력 분산의 문제,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칼빈 신학이 말하는 직제론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다른 문제들(한국 장로교의 상황에서 목사가 이해하는 장로직, 장로가 이해하는 목사직, 목사직과 장로직의 관계-그 현실 진단과 해법)을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칼빈 이후 발전되어 온 개혁교회 전통 속에 나타난 “목사직과 장로직”의 문제도 있으나, 지면 제한으로 이 글은 칼빈의 직제론에 집중하면서, 목사직과 장로직을 부각시켜 보려고 한다.

만인제사장직론 : 모든 안수례 받은 직제의 기본



루터는 교황을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하는 중세의 계층질서적인 교직체제에 반대하여 직제(남성이든 여성이든)를 교회의 본질로 보지 않고, 교회의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측면과 복음을 교회의 본질로 보면서, 이 본질을 나타내는 교회의 가시적 표지(標識)를 주장한다. 루터는 〈로마의 교황주의에 관하여〉(1520)에서 교회의 표지로서 “세례, 성만찬, 복음 설교”를 말했고, 이것을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복음에 따라 성례전(세례와 성만찬)이 집례되는 모든 믿는 자들의 회집이다. 복음이 순수하게 이해되는 가운데 설교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례전이 베풀어지는 것은 기독교의 참된 일치를 위하여 충분하다(제7항).¹⁾

이상 루터에게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그것이 남성으로 구성되었든, 여성으로 구성되었든 직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음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에 달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직제가 교회의 본질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루터 신학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신칭의를 얻고 세례를 받은)의 만인제사장직은 종교개혁 교회 본질론 다음에 제일 먼저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1520년 루터는 특수 교역직(안수례 받은 교역직을 포함)을 논하기에 앞서 만인제사장직을 먼저 논했다. 1520년의 3작품, 〈독일 귀족에게 주는 글〉, 〈교회의 바벨론 포로〉 및 〈기독자의 자유〉는 각각 만인제사장직론 위에 서있다. 대체로 루터의 만인제사장의 근거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세례를 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status)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데 있다. 즉, 루터에게 있어서는 교황과 한 기독교인 농부 사이에는 신분(status)이 아니라 직책(Amt)만이 다른 것으로 보았다.

루터에게 있어서 만인제사장직은 말씀(복음)설교와 세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에 근거한다. “이 말씀의 교역은 교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W.A.11.96) “말씀의 교역(the ministry of the Word)은 교회 안에서



| 특집 | 한국교회의 부서지와 통합 |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높은 직책이요… 평신도의 신분상의 권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 명령에 의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속한다.” (Luther's Works 40.23).²⁾

끌으로 평신도도 만인제사장으로서 서로 말씀(복음)의 교역으로 죄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차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중세의 사제들이 행사하던 열쇠의 권한이 만인제사장들인 평신도들에게로 옮겨 온 것이다.(L.W. 40.27f). (W.A. 10. III.395) 하지만 루터는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평신도들의 만인제사장직은 교회를 혼돈과 무질서로 인도한다고 보아,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루터는 한 특정 평신도가 회중 전체를 대표하기 위하여 전 회중의 동의 혹은 선임자의 부름에 의하여 특수 교역직(vs. 만인제사장의 보편 교역)을 맡아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바, 그 누구도 공동체의 동의나 선임자의 부름 없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L.W. 36.116)고 했다. 그리고 루터는 <독일 귀족에게 주는 글>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세례의 물로부터 나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봉헌된(성별된) 사제, 감독, 교황이라고 자랑할 수 있으나 누구나 그와 같은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 평신도들은 모두 동일한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누구도 회중의 동의와 선거 없이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하여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역을 스스로 나서서 떠맡아서는 안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구도 공동체의 권위와 동의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를 감히 스스로 떠맡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L.W. 44.129).³⁾

칼빈의 저서들에 나타난 직제론(목사와 장로)

칼빈은 <기독교강요>(1536년 8월, 초판)와 <제네바 신앙고백서>(1536년 11월)에서는 사도들의 말씀과 성례전 집례를 이어받은 ‘목사직’과 ‘집사직’에 대



해서만 논한다. “장로교 직제론”(presbyterianism)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두 번째 문서에서, 칼빈은 ‘말씀’을 교역하는 목사가 동일한 ‘말씀’을 따라 교인들을 들보고 감독할 것을 주장한다. 마태복음 18장에 입각한 ‘출교’를 논하면서 중세기와는 달리 치리와 권징을 ‘교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나, 아직은 이 ‘교회’의 의미를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그 어떤 치리와 권징 기구도 제시하지 않았다.

칼빈은 제1차 제네바 종교개혁을 위한 〈The Articles on the Organization...〉(1537)란 글에서 비로소 “어떤 생활이 방정하고 모범된 평신도들”의 감독권을 내세운다. 틀림없이 마태복음 18장의 ‘교회’가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평신도들’로 이해된 것이 분명하다. 칼빈은 여기에서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서 선출될 ‘어떤 평신도들’을 언급하면서, 중세의 치리와 권징 기구와는 달리 평신도와 목사로 구성된 어떤 치리와 권징 기구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이 ‘어떤 평신도들’을 결코 ‘장로들’이라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아직도 ‘장로직’을 성서적 직분(scriptural office)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어떤 평신도들’을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것이 ‘장로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때, 칼빈은 역사적, 교회적 필요에 따라, ‘장로직’을 발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중직(목사, 장로, 집사, 교사)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는 오이콜람파디우스와 마틴 부처의 직제론에 영향을 받은, 칼빈의 슈트라스부르 체류 기간 이후인 1541년의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교회 헌법)에 와서 확정된다. 그런데 칼빈은 이 4직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말할 뿐, 아직 성서적 근거들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다. 물론, 칼빈이 목사직과 집사직에 관하여는 초판 기독교강요에서부터 말하고 있다. 칼빈은 여기에서 목사가 장로의 직책은 공유하나, 장로는 어디까지나 목사의 직분과는 구별되는, 치리와 권징에 관한 직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칼빈은 목사의 선출에 있어서는 목사가 주도권을, 장로의 선출에 있어서는 시의회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협의회적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장로는 1년 동안 일을 시켜 보고, 무 흠하게 모든 일들을 잘 해 내면



1년 동안 장로 일을 더 보게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제네바 시의회와 협의하여 (장로는 시의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 두게 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장로들’이 국가의 공직자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상황적인 것으로 돌리고 싶다. 끝으로 우리는 집사직이 사도행전 6장에 근거하여 ‘diakonia’, 즉 넓은 의미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칼빈이 이 ‘집사직’을 제네바 시(市)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종판 〈기독교강요〉(1559)는 ‘교회’를 “은혜의 외적인 수단”으로 보아 교회의 직분들을 통한 교회의 교역을 외적인 수단으로 보는 바, 직제를 “교회의 본질로부터 나왔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bene esse ecclesiae) 것으로 본다. 칼빈은 직제를 ‘신경조직’ 혹은 “뼈와 뼈를 잇는 인대”라고 하였다. 개혁교회 전통이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구원 이외에 예배, 기독교적인 삶 그리고 직제에 있어서까지 성서적 증거를 따르고 있는 바, 칼빈은 비로소 1559년에 와서 4직분에 대한 성서적 근거들을 확실히 제시하였다. 이로써, 이 4직분이 성서적 직제(scriptural office)임을 양보하지 않게 되었다. 끝으로 칼빈은 “협의회적 특성”(collegiality)과 키프리안의 “동등한 자 중의 우위”(primus inter pares) 원리에 입각하여 당회장, 노회장 및 총회장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교분리 원칙을 계속 주장한다.

〈제네바 교회의 직제〉(1561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이 치리와 권징에 관한 한 아직도 완전한 국교분리의 원칙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목사들의 목사에 대한 권징이 강조되고 있으며, 장로들의 평신도에 대한 권징도 강조되고 있는 바, 칼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회와 노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고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교사직’에 대한 넓은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 ‘집사직’의 대(對) 제네바 사회 봉사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을 수용하면서도 ‘특수 교역직’(the special ministry)으로서 ‘장로교 직제’(presbyterianism)를 제시한 칼빈과 장로교 전통들은 그렇다고 재세례파교회의 직제론처럼 개교회주의로 나가지 않았고, 각급 치리기구들의 유기적인 관계와 이 치리기구들에서의 장로들의 협의회적 역할을 매우 강



조하였다. 칼빈과 장로교 전통들은 치리와 권징을 결코 감독 한 사람이나 개교회의 목사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따라서 장로교는 직제론에 있어서 침례교회나 회중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와 구별된다. 장로교는 우측으로는 감독 교회들(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성공회 등)을, 그리고 좌측으로는 회중 중심의 개교회주의 교파들(침례교나 회중교회 등)을 두고, 그 중도노선을 걷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쪽 모두와 직제론 대화에 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장로교회는 기존의 장로교적 직제를 유지하면서도 루터의 만인 제사장에 입각한 평신도 직제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사, 장로, 교사, 집사의 이상적인 관계?

장로교 전통들 가운데 이 4직분이 평등함을 강조하는 전통에 유의해야 한다. 이 4직분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둑거리에 있다. 이 4직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한다(ministerium Verbi Dei). 모든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수례 받은 특수 교역직에 종사하기 전에 이미 ‘만인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등한 신분을 가지고, “교회의 일반적 교역직”(the general ministry of the Church)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항상 목사가 장로 위에, 장로가 집사와 교사 위에, 그리고 집사와 교사가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장로단이 목사 위에 군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칼빈과 장로교 전통의 4직분은 결코 하향식 위계질서가 아니다.

말씀과 성례전 집례를 맡은 목사직, 이 동일한 말씀을 따라 치리와 권징에 임하는 장로직, 이 말씀의 본성을 따라 봉사에 힘쓰는 집사직,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 빛날 그 어떤 평신도 직분이라도 이같은 원칙을 결코 떠날 수 없다. 목사, 장로, 집사가 받는 안수례의 의미는 목사가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 설교하고, 장로 역시 이 사도적 말씀에 따라 치리와 권징에 힘쓰고, 집사도 이 사도적 말씀의 요구를 따라 섬겨야 한다는데에 있다. 그리고 안수를 받지 않는 ‘교사’도



| 특집 | 한국교회의 목사직과 성직은 다른 것인가? 문제인가?

이 사도적 전승(복음, 성서 및 복음과 성서에 근거한 신학)을 수호하고, 변호하며,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 역시 ‘사도적’이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파송을 받은 교회의 사도성(apostello는 “내가 파송한다”를 뜻함)의 의미는 또한 이 ‘파송’에도 있다. 모든 평신도는 동일한 사도적 전승을 받고,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를 일치의 초점으로 하는 4중직이다. 즉, 장로교의 직제는 말씀과 성례의 교역자인 목사에게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토 베버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옳다.

이것은 그 어떤 일반적인 평등성이 아니라, 섬김에 있어서의 평등성이어서 그것은 그 어떤 통일성(Identität)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통일성 속에서 4중성이요, 4중성 속에서 통일성이다.⁴⁾

결론 (요약 및 제언)

1. 장로 개념은 단순히 신약성경의 그것이 아니다. 칼빈은 신약성경의 ‘장로’란 그 신분에 있어서 ‘감독’과 ‘목사’와 동등한 것으로 보면서, 이 3 직분들 사이의 기능상의 차이를 밝힌다. 칼빈의 장로 개념은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졌다 고 보인다. 오이콜람파디우스와 마틴 부처로부터 유래한 장로개념은 당시 민주 주의적인 대의체제를 실행하고 있었던 스위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의 정치체제로 부터 영향 받은 바가 크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대로 칼빈의 경우, 장로 개념이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매우 상황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장로개념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대표”라는 점이 중요하다.

2. 칼빈의 경우는 목사직의 직능과 장로직의 직능이 뚜렷이 구별된다. 즉, 목사는 주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하고, 교회 전체를 감독하며, 장로직은 주로 치리와 권징에 참여하는 직능이다. 장로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성만찬을 베풀거나 목사 후보생 안수 예식에서 안수하는 행



위에 참여하거나 하는 문제들은 칼빈 이후 개혁교회의 전통 속에서 지역별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생겨난 다양성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목사, 장로, 집사, 교사라는 4종직이 결코 하향식의 계층질서적인 체제는 아니다. 이미 본문에서 지적한바, 이 4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등거리(等距離)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도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사도성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도성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동료들로서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집단 지도체제”(collegiality)라는 점이다. 교회의 감독권이 교황이나 총주교나 주교에 있지 않고, “집단 지도체제”에 있다는 말이다.

3. 필자는 루터의 “만인제사장 직론”을 제일 먼저 눈했는데, 오늘날에는 『세례·성만찬·직제』(BEM)(1982) 문서나 『제2 바티칸 공의회 문서』(1962-1965)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직제론에서 특수 교역직(안수례 받은 교역직)을 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vocatio populi Dei)을 논한다. 요즈음은 모든 평신도들의 교역 활성화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장로교의 헌법(직제 부분)에는 “만인제사장직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4. 끝으로 우리 헌법에는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요, 다른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라고 하였다. 전자는 목사이고, 후자는 장로이다. 이는 스코틀랜드 계열의 미국 장로교회로부터 전수된 것으로 우리 한국 장로교 안에서 장로 개념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장로의 임기에 있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3분의 1정도와 우리 한국 장로교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장로교만이 장로직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다.

● ● 주

- 1) "The Augsburg Confession(1530)", in Theodore G. Tappert, ed., *The Book of Concor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9), p. 32.
- 2) Conrad Bergendoff, ed. and tr., *Luther's Works vol. 40*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8).
- 3) James Atkinson, ed. and tr., *Luther's Work vol. 44* (Philadelphia: Fortress Preess, 1966).
- 4)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 1968), pp. 34-37.